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3
----------	-----

2020. 12. 18.(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17일
- 나.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 12월 9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기술창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중 반도체 산업은 충북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역 핵심 산업임
- 도내에 설계, 전공정, 후공정, 소재 등 총 120개 기업이 집적되어 향후 시스템반도체 거점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필요

[충청북도 반도체 산업 현황]

☑ 기업 현황

-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수 : 전국 1,566개, **충북 98개(전국 5위)**
- 전국비중 : **충북 6.3%** (경기 50.1%, 충남 9.8%, 인천 8.5%, 서울 8.0%)
-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수 : 전국 128,060명, **충북 13,313명(전국 2위)**
- 전국비중 : **충북 10.4%** (경기 60.3%, 충남 7.6%, 인천 4.7%)

☑ 생산 현황

- 「반도체 제조업」 출하액 : 전국 139.5조원, **충북 13.0조원(전국 2위)**
- 전국비중 : **충북 9.3%** (경기 78.8%, 충남 6.3%, 경북 1.6%)

☑ 수출 현황

- 전국 반도체 수출액(KITA 2019) : 1,267억\$(전체 품목 중 1위, 21%)
- 수출비중 : 메모리 73%, 시스템 27%
- 충북 반도체 수출액(국제통상과) : 96.9억\$(전체 품목 중 1위, 42%)
- 수출비중 : 메모리 86%, 시스템 14%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3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사업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와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기술창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안 제9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은 대기업·메모리 중심의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시장 및 성장률이 큰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관련 집적화단지조성 및 관련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 본 조례안은 **우리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도체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반도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반도체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북 총수출액의 40%(2018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3. 관련 조문

- 안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1호~8호
 -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4. 반도체관련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6. 반도체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비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다. 추 계 결 과 : 26,594백만원(국비 8,974, 도비 11,400, 시군비 6,220)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지방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시스템반도체 기업지원 인프라조성 등 3개 사업	26,594	8,384	8,446	5,658	2,053	2,053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6. 작성자 : 신성장동력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220-8450)

반도체산업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2020~2024)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개 사업	합 계	26,594,000	8,384,000	8,446,000	5,658,000	2,053,000	2,053,000
	국비	8,974,000	3,404,000	3,666,000	1,278,000	313,000	313,000
	도비	11,400,000	2,740,000	2,640,000	2,540,000	1,740,000	1,740,000
	시군비	6,220,000	2,240,000	2,140,000	1,840,000	0	0
	자담	0	0	0	0	0	0
시스템 반도체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소 계	16,402,000	6,404,000	6,393,000	3,605,000	0	0
	국비	7,482,000	3,164,000	3,353,000	965,000	0	0
	도비	2,700,000	1,000,000	900,000	800,000	0	0
	시군비	6,220,000	2,240,000	2,140,000	1,840,000	0	0
	자담	0	0	0	0	0	0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 계	1,692,000	280,000	353,000	353,000	353,000	353,000
	국비	1,492,000	240,000	313,000	313,000	313,000	313,000
	도비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시군비	0	0	0	0	0	0
	자담	0	0	0	0	0	0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강화	소 계	8,5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8,5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시군비	0	0	0	0	0	0
	자담	0	0	0	0	0	0

반도체산업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2020~2024) 세부투자계획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개 사업 분야	합 계	26,594,000	8,384,000	8,446,000	5,658,000	2,053,000	2,053,000
	국비	8,974,000	3,404,000	3,666,000	1,278,000	313,000	313,000
	도비	11,400,000	2,740,000	2,640,000	2,540,000	1,740,000	1,740,000
	시군비	6,220,000	2,240,000	2,140,000	1,840,000	0	0
	자담	0	0	0	0	0	0
시스템 반도체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합계	16,402,000	6,404,000	6,393,000	3,605,000	0	0
	반도체 실장기술 지원센터	16,402,000	6,404,000	6,393,000	3,605,000	0	0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합계	1,692,000	280,000	353,000	353,000	353,000	353,000
	반도체 전문가포럼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 인력 양성	1,592,000	260,000	333,000	333,000	333,000	333,000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강화	합계	8,5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시스템반도체 컨설팅지원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시스템반도체 마케팅 지원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